

공 고

●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-095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23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(주)키*탁 등 8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
(☎ 02-6735-8133/ FAX 02-6735-8144 / E-mail :hsham0302@korea.kr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 반 사 항	과 태 료 금 액(원)	스 팜 U R L 전 화 번 호	광 고 내 용
1	(주)키*탁	110111 -6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10-**-35-0454	주식
2	주식회사 사*퍼스	284111 -0*****	경기도 남양주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010-**-21-1265	주식
3	주식회사 씨*엑스	110111 -66*****	서울시 관악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070-**-68-4360	핸드폰 가입
4	주식회사 네*퀴	284911 -0*****	경기도 파주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3,750,000	16**-2929	대리 운전
5	강*선	910820 -2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10-**-68-9169	분양
6	이*주	750520 -1*****	서울시 강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2-**-88-7142	교육
7	최*수	630825 -1*****	경기도 시흥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15,000,000	18**-7419	물품 판매
8	주식회사 나*스경제 연구소	121111 -0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3,750,000	02-**-53-8256	주식